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52 호

2007년 5월 4일 금요일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2007-232호(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 규정)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48호(도로 지정 공고(수산동 141, 141-1, 140-3, 140-4, 140-5, 140-15, 140-16, 140-17, 140-18, 140-19)) 1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51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변경공고) 2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52호(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3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56호(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남동구 구월동 3-1번지 외 9, 332호)) 3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58호(의료급여 관리사 채용 공고) 4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59호(공시송달 (동양종합건설 외 9명)) 4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60호(공시송달 (연성례 외 2건)) 4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63호(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4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64호(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 4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65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5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67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정정(변경)공고) 5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68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서포터즈 채용 공고) 6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72호(시설공사(긴급)입찰공고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방제공사) ... 7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79호(공시송달(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7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480호(도로지정공고(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46-95)) 77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18호(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인천논현2지구 7블럭 새터마을 신일해피트리)) 78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7-464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4, 2-74호선)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남동구 고잔동, 논현동 일원)) ... 8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7-465호(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남동구 구월동 산1-14외 3필지 일원)) ... 8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7-466호(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시립도서관)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남동구 구월동 610-1외 2필지 일원)) ... 87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7년 5 월 4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훈령 제2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동구 노인의 일자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역할을 다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이하 “노인인력관리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용규정)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이하 노인인력관리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운 영

제4조(이용대상) 노인인력관리센터 이용(등록) 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자로, 남동구 주민에 한한다.

제5조(운영방침) ① 노인인력관리센터는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이를 이용하는 참여자 및 수요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참여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지역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⑤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지역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 사업의 적정성·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종사자 관리

제6조(직원의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직과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② 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 채용 시에는 다음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포함) 1매.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4.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 상한연령, 당면퇴직, 직권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공무원인사 규칙”을 준용하되, 설립당시 신규 임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의 병역 의무를 기피한 자

제8조(복무관리) ①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이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에 종사 할 수 없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향응 및 금품 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에 대한 휴가·연가·특별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은 소속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신분증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이하 “대장” 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⑦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은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대장에 기재 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4장 직원 보수 지급 기준

제9조(용어의 정의) ①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책 별 또는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③ “수당”이라 함은 기본급 외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④ “복리후생”이라 함은 직원과 그 가족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승급”이라 함은 일정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경력인정 및 호봉책정) ① 노인인력관리센터 근무 경력, 군복무경력(무관후 보생 경력은 제외), 공무원 경력,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의 경력을 인정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 정 등을 고려하여 호봉 합산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합산경력이 10년 미만일 경우 총 합산경력 호봉 을 초임 호봉으로 하고 합산경력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10호봉을 초임 호봉, 합산경력이 20년 이상일 경우 20호봉을 초임호봉으로 한다. 다만, 초임 호봉의 책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③ 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다시 책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당해 직원이 적용되는 초임 호봉 책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④ 호봉을 재 책정 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책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호봉 재 책 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⑤ 봉급 표에 규정된 최고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호봉은 매년1월1일, 7월1일자로 승급한다.

제11조(보수 및 수당의 지급기준) ① 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의 봉급월액 및 수당 지급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보건복지부 또는 인천광역시 지침)으로 한다.

②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

③ 보수는 본인에게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수의 계산·지급방법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⑥ 무단 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허가받은 결근자의 경우에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규정한 연가일 수를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속기간 1년 미만 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⑨ 퇴직금 지급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⑩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 일수에서 제외한다.

⑪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한다.

⑫ 퇴직적립금이 법정퇴직금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8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반환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법정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장 재무 · 회계

제12조(재무회계 관리) ① 노인인력관리센터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23호, '05.7.15시행)의 시설회계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노인인력관리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 결의 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입하지 않으면 지출 할 수 없다.

③ 회계관계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 관계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재무원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다.

1. 재무원 : 계약, 기타 지출원인 행위를 담당
2. 수입원 : 수입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
3. 지출원 : 예산의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
4. 물품관리원 : 고정자산, 물품 및 기타 자산을 관리하고 물품의 유지 보수 및 사용 담당

④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보직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로서의 임명이 없어도 회계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1. 재무원 : 소장
2. 지출원 : 운영팀장
3. 수입원 : 운영팀장
4. 물품관리원 : 운영팀장

⑤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 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재무원 : 연간 재산세 15만원 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이행 보증보험
2. 지출원 및 기타 회계직 : 연간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이행 보증보험

제13조(재정운영 원칙)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 하여야하며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세출예산 과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 추진비

가.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업무추진비의 지출 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의 30%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집행 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 내역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접대성 경비의 경우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첨부한다. 다만, 영수증 요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직원의 영수 증서를 첨부한다.

(2) 업무추진비를 미리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는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고 집행내역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센터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제잡비로 센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 가능

다. 회의비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이며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2. 운영비 : 일반적인 센터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

가. 수용비 및 수수료 :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기본사무용품구입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2) 현수막 등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 등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3)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

(4)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등의 구입비

(5) 기계, 기구,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나. 공공요금 : 우편물 발송요금, 전화료 회선사용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다. 차량비 :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라. 제세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세(법인세, 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마.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바. 여비 : 센터직원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 여비(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준용)

3. 시설비

가. 시설비 :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시설비

나. 자산취득비 :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다.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건축물, 기계장치)·기구·기구·비품수선비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라. 사업비 : 센터운영 외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모든 사업비

제6장 사무관리

제14조(문서관리)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처리하는 모든 문서는 정부 공문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직 및 인력 등 사정으로 정부공문서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문서관리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5.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6. 보고서 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7. 정관 및 관계 질의서류
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상담일지[별지 제4호 서식]
10.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요청)자 상담일지[별지 제5호 서식]

제16조(운영세칙) 노인인력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물품관리 그 밖의 노인인력관리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7장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제1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노인인력관리센터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지역실정 및 행정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은 본 규정의 사업수행 원칙에 따라 수립하되 각 사업이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대상별로 서비스의 기능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사업계획(수지계산서 포함)은 회계연도 개시 전 3개월 전 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실적 분석 및 평가) ① 노인인력관리센터는 매 회계연도 사업의 분기별 실적을 작성하여 매 분기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인인력관리센터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인인력관리센터는 매년 수행사업에 대한 실적과 효과를 분석하여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행 사업의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시설 형태 및 구조
2.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
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복지증진 효과와 욕구변화
4. 인력관리 및 재정투입의 합리성 등
5. 개선 방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장 지도·감독

제1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인력관리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노인인력관리센터 소장은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 할 때에는 이를 문서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사 진) (일련번호)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소 속 : 노인인력관리센터 직 명 : 성 명 : 주민등록 : 번 호 20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전면)
8.1

1
1.41
0.8
0.8
1.5
2.6
1.3

4
0.75
0.75
4

5.5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상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개 인 용)

				접수번호	
사진	성 명		전화번호 (H · P)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가 족 관 계	☐ 배우자 ☐ 자녀()		동거가족	명(배우자: , 자녀: , 손)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경 력 사 항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		
(근무기간)	()				
※일자리	()				
참여포함	()				
월 생활비용 (동거가족)	☐ 10만원 미만 ☐ 10~30만원 ☐ 30~50만원 ☐ 50~100만원 ☐ 100만원이상				
참여희망분야				희망소득금액	만원
신 청 동 기	☐ 경제적도움 ☐ 자기발전 ☐ 지역사회발전기여 ☐ 기 타				
상담자 의견					
위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상담일지

		접수번호		
성 명		전화번호 (H · P)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가족관련 특이사항 * 독거, 이혼, 사별, 노인단독세대 등				
수행능력 판단				
근무 가능 형태	☐ 시간제 ☐ 종일제 ☐ 격일제 ☐ 관계없음 시간대 : 오전, 오후, 격일, 매일			
건 강 상 태 및 질병 유무				
월 소득금액	만원			
유사사업 참여 여부 및 내용				
각종 관련분야 참여경력 및 내용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요청자) 상담일지

수요처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정 원		현 원	
임 금 액	월 원	요청분야	
채용인원		구 분	남 . 여
채용기간	~	채용시간	오전, 오후
채용조건			
상기와 같이 본인(단체)은 노인인력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구비서류: 약도 별지 첨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

- 노인인력관리센터 이용대상 및 운영방침(안 제4조 내지 제5조)
- 직원의 채용 및 결격사유(안 제6조 내지 제7조)
- 직원의 복무관리(안 제8조)
- 직원의 경력인정 및 호봉책정(안 제10조)
-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기준(안 제11조)
- 재무회계 관리 및 재정운영 원칙(안 제12조 내지 제13조)
- 장부, 서류의 비치(안 제15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실적 분석, 평가(안 제17조 내지 제18조)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7-448호

도로의 지정 · 공고

건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 ·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로현황

가. 위 치 : 수산동 141,141-1,140-3,140-4,140-5,140-15,140-16,140-17,
140-18, 140-19

나. 도로길이 : 100.3 m

다. 도로너비 : 6 m

라. 도로면적 : 620 m²

마. 토지소유자 : 조한경, 부민건설(주)

바. 도로지정사유 : 건축허가(신축)

2. 건축허가현황

- 붙임 1 참조

붙임 1 건축허가 현황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건축허가일	허가번호	규 모	비 고
1	수산동 141-1, 140-18, 140-19	조한경	2003.10.28	2003-도시계획과-82	지하1/지상2 연면적 489.44㎡	설계변경
2	수산동 141, 141-1	조한경	2003.11.22	2003-도시계획과-92	지하1/지상2 연면적 339.51㎡	설계변경
3	수산동 140-4, 140-3, 140-15, 141	부민건설 주식회사	2003.10.20	2003-도시계획과-74	지하1/지상2 연면적 399.73㎡	설계변경
4	수산동 140-3, 140-14	부민건설 주식회사	2003.10.20	2003-도시계획과-75	지하1/지상2 연면적 369.22㎡	설계변경
5	수산동 140-17	부민건설 주식회사	2003.11.7	2003-도시계획과-87	지하1/지상2 연면적 383.44㎡	설계변경
6	수산동 140-18, 140-3, 140-5, 140-16, 40-17, 140-19	부민건설 주식회사	2003.10.20	2003-도시계획과-73	지하1/지상2 연면적 419.25㎡	설계변경
7	수산동 140-19, 140-5, 141-1	부민건설 주식회사	2007.4.16	2007-건축과-87	지하1/지상2 연면적 447.08㎡	신축
8	수산동 140-16, 140-3, 140-14, 140-17	부민건설 주식회사	2007.4.16	2007-건축과-88	지하1/지상2 연면적 354.7㎡	신축

끝.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51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변경공고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호, 2006.12.15)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월 4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공고기간 : 2007. 4. 27 ~ 2007. 5. 7(11일간:공휴일포함)

2.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구광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구광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창환 다. 설 계 자 : (주)화인씨엠건축사사무소 배홍렬 라. 시 공 사 : 삼익산업개발(주) 마.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22외 1필지 ○ 대지면적 : 2,692.2㎡ ○ 규 모 : 지하2층/지상9~13층, 1개동, 6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연 면 적 : 9,860.82㎡ ○ 사업기간 : 2007. 5. 20 ~ 2008. 6. 30. ○ 사업계획승인일 : 2004. 5. 7 바. 사 업 비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14,920,000 ○ 대 지 비 : 3,500,000 ○ 총공사비 : 10,506,400 - 감리대상공사비 : 9,594,073(부가가치세별도) - 타법감리공사비 : 912,327 ※ 감리예비기준 : 278,803,761원(총공사비의 2.906%) - 감리최고예비가격 : 278,803,761원 - 감리최저예비가격 : 262,075,535원 사.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별첨참조)	아. 복수예비가격 ①278,803,761원 ②277,607,692원 ③276,411,624원 ④275,215,556원 ⑤274,019,488원 ⑥272,823,420원 ⑦271,627,352원 ⑧270,439,648원 ⑨269,243,580원 ⑩268,047,511원 ⑪266,851,443원 ⑫265,655,375원 ⑬264,459,307원 ⑭263,263,239원 ⑮262,075,535원 ※ 상기 금액은 부가 가치세 제외 금액임
--	--

3. 감리자 등의 자격

- ① 감리자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단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② 감리원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52, 2006.12.15)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
 -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
 - ※ 감리자(원)의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

4. 지정방법

- ① 평가기준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
- ② 적격심사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에 의함
- ③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기타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함

5. 응모서류

가. 감리자지정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감리자(원)에 대한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감리비입찰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별도 이중 봉투에 봉인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표지에 감리비입찰서, 응모번호, 사업주체, 상호, 감리자 명기)
- ④ 건축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 한함),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 기타 위임장(대리인참석시): 신청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 ⑤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나. 추가 제출서류(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뒷면의 사실확인서류 일체
(평가결과에 따라 감리자 지정권자가 요청시 2007.5.15.한 제출함)

①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 재무상태검토보고서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 인정함.

②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③ 행정제재 여부 확인서

- 300세대미만인 경우 :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사실증명원
- 300세대이상인 경우 : 한국건설감리협회 발행 확인서

④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수행 여부 확인서

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⑥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에 해당되는 경우 확인서

⑦ 감리업무수행계획서

⑧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⑨ 감리원(추가 감리원포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⑩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보조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적격여부) 및 교체빈도(5점)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이외 추가로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해당 평가 항목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함.

⑪ 서약서 1부(별지 제6호서식)

※ 상기 “나”항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건설기술개발 및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은 동기준 부칙 제3항에 의거(건설기술개발,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적용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을 적용함.

※ 적격심사후 낙찰이 가능한 상위 5개사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만일 증빙서류를 통보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리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함)

※ 제출 서류 중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재무상태검토보고서 · 행정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교육훈련증명서 사본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기타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름.)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업체간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7. 재무상태평가 :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 및 자기 자본비율

① 평균 유동비율 : 253.69%

② 평균 자기자본비율 : 60.17%

8. 응모서류 접수기간

① 일 시 : 2007. 05. 08(화) 09:00부터 11:30까지 접수

②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층 건축과(도시개선팀)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상기근무 시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③ 유의사항

·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등의 추천(입찰서 개봉 포함)일시 및 장소

연 번	사 업 주 제 (세대수)	예정가격 주점⇒가격 입찰서 개찰		
		년 · 월 · 일	시 간	장 소
1	구광명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69세대)	2007.05.08 (화)	14:00부터	남동구청(7층 소강당)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① 예정가격의 추첨시에는 감리자지정 신청을 한 감리자(또는 위임을 받은자)가 참석하여 예정가격을 추첨한 4개의 평균 가격으로 하며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 함.
- ②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추첨일에는 추첨 10분전까지 감리자 지정신청자(대표) 또는 위임장 제출한 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됨.

10. 열람 및 이의신청

- ① 기 간 : 2007.05.10 ~ 2007.05.16(5일간)
- ② 방 법 :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감리자지정 신청자가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열람 및 이의 신청 할수 있는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 자기 평가표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 신청 불가

11. 낙찰자 결정방법

- 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552(2006. 12. 15)호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12. 기타 유의사항

-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나. 신규 감리원(배치할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 감리원은 전 공정에 배치하여야 함.
- 다. 비상주 감리원은 1인에 한함.
- 라. 인·월수 산정시 비상주 분은 전체 인·월수의 15% 이내 이어야 함.
- 마. 감리원 교육 가산 점수는 공고일 이전 것만 인정 함.
-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만 입찰서 개봉 및 예정가 추첨 후 참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 반환(당일에 한함)

- 사. 응모서류 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음
- 아. 자기평가 기재내용과 첨부서류 미비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은 우리 구가 임의평가하며,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건설공사로 인정함
- 자. 입찰금액이 아라비아 숫자금액과 한글표기 금액이 다른 감리입찰서 및 인감누락 입찰서는 무효처리 함.
- 차. 자기평가서상에 자체평가 내용이 사실보다 낮게된 경우 상향조정하지 않으며, 사실보다 높게 평가하여 기재한 경우 사실대로 조정 평가함.
- 카. 공고문 및 감리자지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정권자 결정에 따름.
- 타. 감리자지정 중·후 사업계획변경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 등에 의거 당사자간 정산하여야 함.
- 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경미한 변경시 감리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발생시에는 지정당시의 예정가격요율 또는 낙찰율 등에 의거 당사자간 정산하여야 함
- 하. 분야별 공사기간 이외에 감리원(평가, 비평가)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계획 부적정으로 감점 처리함. 다만, 감리대가 기준 인·월수를 초과하여 배치(감리회사가 인건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거.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는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너. 지역가점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는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6)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기타 의문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 도시개선팀(☎032-453-280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2. 공정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별첨). 끝.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구광명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최창환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22외1		대지면적	2,692.2㎡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9~13층, 1동, 69세대	9,860.82㎡			
설 계 자	성 명	배홍렬	상 호	(주)화인씨엠건축사사무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82-13 천우빌딩 2층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주택건설공사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5순위업체 해당)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1.1.1.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감 리 원	⑪확인서	1.1.1.1.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에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제정상태 건 실 도	유동비용	4			예) 00(%)	
		자본비용	3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연면적)		15			예) 100,00(m ²)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별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0.5			예) 00(%)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의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충족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 리 원	총 괄 감 리 원	등급		6		예) 00(년)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2)		예) 00기술사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별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연령제한	(-0.5)		예) 만00(세)		
	소 계		21				
	분 야 별 감 리 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기타설비	2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기타설비	6			
		가점	자격가점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별점(점)	
		감점	행정제재	토목	(-1)		
				기타설비	(-1)		
				건축	(-0.5)		예) 00(건)
			교체빈도	토목	(-0.5)		
				기타설비	(-0.5)		
				연령제한	건축	(-0.5)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상 주 감 리 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계		5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구광명연립재건축정비사업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영 비 율 (%)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 채 비 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 동 비 율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 출 액 순 이 익 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 자 본 회 전 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 표 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 지 면 적	㎡
	사 업 내 용	공 사 명	○○공사	사업승인일	20 년 월 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20 년 월 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년 월 일)부터 3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3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사유로 인하여 현재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지되고 있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인)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치정권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사 업 명 :

☐ 신 청 인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감리공고문을 숙지 하였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감리자 교체, 벌점부여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7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예정 공정표

(공사기간: 2007. 5. 20 ~ 2008. 6. 30)

● 공사명 : 구광명연립 재건축공사																		
분야	공 종	2007 년										2008 년						비 고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토목	1. 흙막이 및 토공사	■																
	2. 조경공사												■					
	3. 부대 토목공사											■						
건축	4. 공통가설공사	■																
	5. 철근콘크리트공사			■										■				
	6. 조적공사						■											
	7. 방수공사						■					■						
	8. 미장공사						■						■					
	9. 목공사						■						■					
	10. 창호 및 유리공사						■							■				
	11. 석공사												■					
	12. 타일공사												■					
	13. 도장공사												■					
	14. 수장공사											■			■			
	15. 금속공사								■							■		
	16. 잡공사			■														
기계 설비	17. 난방위생설비공사		■															
전기 설비	18. 전기설비공사	■																
공 정 율	계	2.44	9.36	11.49	8.25	8.45	11.57	8.27	3.95	2.00	3.89	9.87	11.42	6.84	2.20			
	누계	2.44	11.80	23.29	31.54	39.99	51.56	59.83	63.78	65.78	69.67	79.54	90.96	97.80	1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52 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7. 04. 30 ~ 05. 14

2. 공고사항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식품자동판매기	만수2-40	동네글방	김경애	111111-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5-167
식품자동판매기	구월4-99-4	쌍방울구월랜드	임경자	222222-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266-2
식품자동판매기	남도-31	소피아	김화곤	620224-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352-18
식품자동판매기	남도-2	제일슈퍼	박영민	650225-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353-9
식품자동판매기	구월4-2003-11	신한상사	장진숙	400415-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278-28,29
식품자동판매기	구월4-2002-4	신한실업	황용상	450207-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264
식품자동판매기	구월4-94-3	동경당약국	김종찬	111111-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267-7
식품자동판매기	만수2-41	페리카나치킨	신금례	111111-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72-38
식품자동판매기	만수2-10	또오기서점	한장환	600520-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5-181
식품자동판매기	구월4-2003-13	김밥나라	최분순	571230-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267-7
식품자동판매기	구월4-99-13	우성유통	전병훈	580508-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274-20
식품자동판매기	논고-26	호구포상회	채혁현	590409-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419-2
식품자동판매기	구월4-2001-1	신성슈퍼	문창희	580114-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349-420
식품자동판매기	만수2-26		박문식	491005-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71-9
식품자동판매기	만수2-12		서광수	480313-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73-18
식품자동판매기	만수2-5		장철성	470707-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71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및 동법 제64조
-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1)
 - 청문일시 : 2007. 05. 25(금) 11: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6층)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3. 기 타 : 청문 불참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2007. 4.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56 호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Ⅰ.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07. 1.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1번지의 9,332호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07. 4. 30 ~ 5. 30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남동구청 세무과)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58 호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의료급여 관리사 1명(간호사)

2.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심사 : 채용기준의 우선순위에 의거 합격자 결정
- 면 접 : 동일순위자 발생시 면접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3. 채용기준

우선순위	사 격 요 건
공통요건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만40세 미만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건의료 상담·사례관리(Case management)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1순위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종합병원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2순위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3순위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4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4. 보수 및 근무계약기간

- 보 수 : 월143만원(4대보험 포함), 출장여비 별도지급
- 근무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계약연장 가능)

5. 서류접수 및 합격자 통보

○ 접수기간 : '07. 5. 10(목) ~ 5. 14(월)

※ 토 .일요일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남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료재활팀)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의료기관 임상경력증명서 1부,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기타자격증 사본 1부

○ 합격자 통보 : '07. 5. 17 (서류심사 및 면접 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의료재활팀(☎453-2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59 호

공 시 송 달

성 명 동양종합건설 외 9명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07년 4월 부과분 주민세

서 류 의 내 용 2007년 4월 법인세할 · 특별징수 주민세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 “반송함 장기방치”,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07. 4. 30일을 2007. 5. 28일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 5. 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주민세 2007.4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주민세)

순번	세목	성명	주소	과세 번호		세액
1	주민세-법인세할	동양종합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6	510	1	2,810,690
2	주민세-법인세할	한구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21 풍년빌딩5층	510	4	6,751,720
3	주민세-법인세할	태진하이텍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55	530	1	371,560
4	주민세-법인세할	우신탱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5-11	670	12	5,730,760
5	주민세-법인세할	신성아이카씨비스	인천 남동구 고잔동 306-19	670	15	467,410
6	주민세-법인세할	신우환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0 남동공단산업유통상가 에이343	670	16	2,004,170
7	주민세-법인세할	케이앤드지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4-3 공단109/4	670	18	1,151,640
8	주민세-법인세할	삼승시스템	인천 남동구 고잔동 191-3	670	21	2,179,560
9	주민세-특별징수	일심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1-6 160/9	670	142	2,434,280
10	주민세-특별징수	덕영알루미늄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3 15/4	670	144	659,71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60 호

공 시 송 달

성 명 연성례외 2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4월 부과분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미납부자 부과분 및 직권분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납기를 2007.5.28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007.4월 취득세 공시송달내역

번호	납세 자명	등록번호	주소	과세년월	세목	과세번호
1	연성례	700430-*****	서울 강동구 성내동 386-13번지 101호	200704	취득세	570-10
2	김경태	7212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7번지 향촌아파트 103동 1702호	200704	취득세	583-9
3	박길봉	520324-*****	서울 양천구 목동 122-162번지	200704	취득세	582-2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63 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 5. 3 ~ 5. 17

2. 공고사항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당 사 자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일반음식점	간석3-352	9회말	김순자	490317-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24
일반음식점	구월3-342	피자피자	박유신	69091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8-28

-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 처분사유 : 시설물멸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및 동법 제64조
-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0)
 - 청문일시 : 2007. 5. 28(월) 11: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6층)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3. 기 타 : 청문 불참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2007. 5. 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6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주 · 정차 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 1명

2. 시험 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최종) : 면접시험 (도로교통법 및 일반상식 등)

3. 응시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험계획공고 전일 현재 응시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인천시 남동구로 되어 있는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40세이상~55세이하(1967.1.1~1952.12.31)인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 ①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정규직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경찰관, 소방관,국가·지방직공무원,군인, 교사 등)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서 교통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③상시종업원 30인이상 기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④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⑤기타 모·부자가정세대로써(법적보호대상이 아닌 제도권밖 세대 포함) 과거 2년 이상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4. 채용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5 . 7 (월) ~ 5 . 9(수) [3일간]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 (공무원 근무 시간 내에 한 함)

6. 시험 일시

- 1차 시험 (서류전형) : 2007. 5 . 10(목)
- 2차 시험 (면접시험) : 2007. 5 . 11(금)

7. 합격자 발표

- 2007. 5 . 14(월)
- ※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재

8. 제출 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

- 응시원서1통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첨부) 각 1통
- 자격증 사본(운전면허증 등)
- 사진 2매 (반명함판 3.5cm × 4.5cm) : 응시원서에 부착
- 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9. 기타 사항

- 보수 수준은 동일자격 기준의 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이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격일제, 월평균 13일 근무, 근무시간 : 주24시간-1일 8시간 기준)
- ※ 일·공휴일,야간근무등 근무조건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첨부 화일 (응시 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 서식)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신 후 직접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 채용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 주차단속팀 【 ☎(032)453-289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6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자격요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문”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453-2502), FAX(453-250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별표1]의 “소장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 시설 · 학교 ·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연 행					개 정(안)				
제12조(직원의 임용)					제12조 (현행과 같음)				
⑤직원임용의 선발 자격은 [별표1] 과 같다.					⑤ (현행과 같음)				
<u>[별표1]</u>					<u>[별표1]</u>				
구분	채용 인원	선발 시험	자 격 기 준		구분	채용 인원	선발 시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1차	2차	
계	5				계	5			
소장	1	서류 면접 전형		○ 공무원 5급 이상으로 제직한다 ○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소장	1	서류 면접 전형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다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급 운영 요원	2	서류 면접 전형		○ 공무원 7급상당 이상 제직한다 ○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6급 운영 요원	2	서류 면접 전형		현행과 같음
8급 운영 요원	2	서류 면접 전형		○ 행정사무보조 일용직 근무 3년 이상 인자,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직한다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을 소지한 자	8급 운영 요원	2	서류 면접 전형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67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정정(변경)공고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호, 2006.12.15)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월 5월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공고기간 : 2007. 5. 3 ~ 2007. 5. 14(12일간:공휴일포함)

2.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구광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구광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창환 다. 설 계 자 : (주)화인씨엠건축사사무소 배홍렬 라.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22외 1필지 ○ 대지면적 : 2,692.2㎡ ○ 규 모 : 지하2층/지상9~13층, 1개동, 6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연 면 적 : 9,860.82㎡ ○ 공사기간 : 2007. 6. 1 ~ 2008. 8. 31. ○ 사업계획승인일 : 2004. 5. 7 마. 사 업 비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14,920,000 ○ 대 지 비 : 3,500,000 ○ 총공사비 : 7,787,000 - 감리대상공사비 : 7,211,920(부가가치세별도) - 타법감리공사비 : 575,080 ※ 감리예비기준 : 212,391,044원(총공사비의 2.945%) 바.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별첨참조)	아. 복수예비가격 ①212,391,044원 ②211,480,796원 ③210,570,551원 ④209,660,304원 ⑤208,750,056원 ⑥207,839,808원 ⑦206,929,563원 ⑧206,019,313원 ⑨205,109,069원 ⑩204,198,822원 ⑪203,288,573원 ⑫202,378,326원 ⑬201,468,081원 ⑭200,557,834원 ⑮199,647,581원 ※ 상기 금액은 부가 가치세 제외 금액임
---	---

3. 감리자 등의 자격

- ① 감리자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단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② 감리원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52, 2006.12.15)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
 -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
 - ※ 감리자(원)의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

4. 지정방법

- ① 평가기준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
- ② 적격심사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에 의함
- ③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기타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함

5. 응모서류

가. 감리자지정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감리자(원)에 대한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감리비입찰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별도 이중 봉투에 봉인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표지에 감리비입찰서, 응모번호, 사업주체, 상호, 감리자 명기)
- ④ 건축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 한함),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 기타 위임장(대리인참석시): 신청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 ⑤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나. 추가 제출서류(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뒷면의 사실확인서류 일체

(평가결과에 따라 감리자 지정권자가 요청시 2007.5.21.한 제출함)

①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 재무상태검토보고서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 인정함.

②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③ 행정제재 여부 확인서

- 300세대미만인 경우 :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사실증명원
- 300세대이상인 경우 : 한국건설감리협회 발행 확인서

④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수행 여부 확인서

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⑥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에 해당되는 경우 확인서

⑦ 감리업무수행계획서

⑧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⑨ 감리원(추가 감리원포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⑩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보조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적격여부) 및 교체빈도(5점)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이외 추가로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해당 평가 항목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함.

⑪ 서약서 1부(별지 제6호서식)

※ 상기 “나”항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건설기술개발 및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은 동기준 부칙 제3항에 의거(건설기술개발,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적용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을 적용함.

※ 적격심사후 낙찰이 가능한 상위 5개사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만일 증빙서류를 통보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리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함)

※ 제출 서류 중 자격증 사본·학력증명서·재무상태검토보고서·행정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교육훈련증명서 사본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기타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름.)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업체간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7. 재무상태평가 :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 및 자기 자본비율

① 평균 유동비율 : 253.69%

② 평균 자기자본비율 : 60.17%

8. 응모서류 접수기간

① 일 시 : 2007. 05. 15(화) 09:00부터 11:30까지 접수

②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층 건축과(도시개선팀)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상기근무 시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③ 유의사항

·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등의 추첨(입찰서 개봉 포함)일시 및 장소

연 번	사 업 주 제 (세대수)	예정가격 추첨⇒가격 입찰서 개찰		
		년 · 월 · 일	시 간	장 소
1	구광명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69세대)	2007.05.15 (화)	14:00부터	남동구청(지하 간담회장)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① 예정가격의 추첨시에는 감리자지정 신청을 한 감리자(또는 위임을 받은자)가 참석하여 예정가격을 추첨한 4개의 평균 가격으로 하며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 함.
- ②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추첨일에는 추첨 10분전까지 감리자 지정신청자(대표) 또는 위임장 제출한 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됨.

10. 열람 및 이의신청

- ① 기 간 : 2007.05.16 ~ 2007.05.22(5일간)
- ② 방 법 :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감리자지정 신청자가 문서로써 신청(FAX문서 불가)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열람 및 이의 신청 할수 있는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 자기 평가표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 신청 불가

11. 낙찰자 결정방법

- 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552(2006. 12. 15)호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12. 기타 유의사항

-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나. 신규 감리원(배치할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 감리원은 전 공정에 배치하여야 함.
다. 비상주 감리원은 1인에 한함.
- 라. 인·월수 산정시 비상주 분은 전체 인·월수의 15% 이내 이어야 함.
- 마. 감리원 교육 가산 점수는 공고일 이전 것만 인정 함.
-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만 입찰서 개봉 및 예정가 추첨 후 참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 반환(당일에 한함)
- 사. 응모서류 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음

- 아. 자기평가 기재내용과 첨부서류 미비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은 우리 구가 임의평가하며,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건설공사로 인정함
- 자. 입찰금액이 아라비아 숫자금액과 한글표기 금액이 다른 감리입찰서 및 인감누락 입찰서는 무효처리 함.
- 차. 자기평가서상에 자체평가 내용이 사실보다 낮게된 경우 상향조정하지 않으며, 사실보다 높게 평가하여 기재한 경우 사실대로 조정 평가함.
- 카. 공고문 및 감리자지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정권자 결정에 따름.
- 타. 감리자지정 중·후 사업계획변경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 등에 의거 당사자간 정산하여야 함.
- 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경미한 변경시 감리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발생시에는 지정당시의 예정가격요율 또는 낙찰율 등에 의거 당사자간 정산하여야 함
- 하. 분야별 공사기간 이외에 감리원(평가, 비평가)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계획 부적정으로 감점 처리함. 다만, 감리대가 기준 인·월수를 초과하여 배치(감리회사가 인건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거.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는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너. 지역가점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는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더.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6)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기타 의문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 도시개선팀(☎032-453-280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2. 공정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별첨). 끝.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구광명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최창환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22외1		대지면적	2,692.2㎡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9~13층, 1동, 69세대	9,860.82㎡			
설 계 자	성 명	배홍렬	상 호	(주)화인씨엠건축사사무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82-13 천우빌딩 2층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주택건설공사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5순위업체 해당)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회 사)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와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1.1.2.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감 리 원	⑪확인서	1.1.2.1.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정상태 건 실 도	유동비율	4			예) 00(%)	
		자본비율	3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연면적)		15			예) 100,00(㎡)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0.5			예) 00(%)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의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절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총 괄 감 리 원	등급		6			예) 00(년)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2)			예)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연령제한	(-0.5)			예) 만00(세)	
	소 계		21				
	분 야 별 감 리 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기타설비	2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기타설비	6				
가점		자격가점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감점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연령제한		건축	(-0.5)			예) 만00(세)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상 주 감 리 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계		5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구광명연립재건축정비사업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제 지		전 화 번 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영 비 율 (%)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 업 내 용	공 사 명	○○공사	사업승인일	20 년 월 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20 년 월 일
		연 면 적	m ²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년 월 일)부터 3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3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사유로 인하여 현재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지되고 있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인)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감리공고문을 숙지하였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감리자 교체, 벌점부여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7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단위:천원)

● 공사명 : 구광명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877,300	877,300	-	-
		건축공사	4,388,574	4,388,574	-	-
		기계설비공사	497,110	497,110	-	-
		전기공사	310,336	-	-	310,336
		정보통신공사	108,320	-	-	108,320
		소방설비공사	40,620	-	-	40,620
	소 계		6,222,260	5,762,984	-	459,276
	일반관리비		897,210	830,804	0	66,406
	이 윤		667,530	618,132	0	49,398
	소 계		7,787,000	7,211,920	-	575,080
간접비	설 계 비		175,766	-	175,766	-
	감 리 비		233,000	-	233,000	-
	일반분양시설 경비		195,000	-	195,000	-
	분담금 및 부담금		300,300	-	300,300	-
	보 상 비		840,000	-	840,000	-
	기타 사여비성 경비		1,809,534	-	1,809,534	-
	소 계		3,553,600	-	3,553,600	-
대 지 비			3,500,000	-	3,500,000	-
부가가치세액			79,400	-	79,400	-
총사업비 계			14,920,000	7,211,920	7,133,000	575,08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6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서포터즈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서포터즈 (주·정차 단속분야)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주 · 정차 단속분야 교통서포터즈 2명

2. 시험 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최종) : 면접시험 (도로교통법 및 기타 상식)

3. 응시 자격

■ 시험 시행계획 공고전일 현재 응시자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인천시 남동구로 되어 있는자

■ 현장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25세이상~40세이하(1982.1.1 ~ 1967.12.31)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운전면허증 2종 보통이상 소지자

② 과거 주차단속 등 유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과거 2년이상 지역사회봉사활동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④ 기타 위②~③호의 상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채용 기간 : 계약 일로 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5. 7(월) ~ 5. 9(수) [3일간]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 함)

6. 시험 일시

■ 1차 시험 (서류전형) : 2007. 5. 10 (목)

■ 2차 시험 (면접시험) : 2007. 5. 11 (금)

7. 합격자 발표

■ 2007. 5. 14 (월)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재

8. 제출 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

■ 응시원서1통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소재지 확인, 가족사항 확인 등), 졸업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기타증빙자료

■ 사진 2매 (반명합판 3.5cm × 4.5cm) : 응시원서에 부착

9. 기타 사항

■ 보수 수준은 월평균 673,000원 (일당 45,000원, 중식비 5,000원, 교통비 1,80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 (격일제, 월평균 13일 근무, 근무시간 : 주24시간)

※ 근무시간은 부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는 노선별·구역별 책임단속 근무 (현장)

■ 원서 교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에서 직접 교부 받거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첨부 화일 (응시 원서)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 주차단속팀 (☎ (032)453-2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서포터즈는 현장 단속업무 수행자로서 업무의 곤란성, 책임성과 대민마찰, 민원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월 평균 지급액 : 673,400원

-일당 월 585,000원(45,000원×13일) + 중식비 65,000원(5,000원×13일) + 교통비 (1,800원×13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72 호

시설공사 (긴급)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방제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관내(남동공단 제외)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공사개요
 - 약제방제 : 감나무(171주)1회, 왕벚나무(2,015주)3회, 녹지대방제(6,700㎡)2회
 - 수간주사 : 버즘나무(1,508주) 2회
- 설계금액 : ₩79,475,000원(추정가액 72,250,000원 부가가치세 7,225,000원)
- 기초금액 : ₩79,475,000원(금칠천구백사십칠만오천원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5월 04일(금) 09:00 ~ 05월09일(수)14: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5월 09일(수) 15: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로 우리구의 전자계약 추진계획에 따라 전자계약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정
삭재공사업 면허소기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
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79,475,00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2007. 01. 12)에 의
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005년도말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244.91% 유동비율 167.57%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
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정비조경팀(032-453-286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5월 0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479 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7. 05. 04 ~ 05. 18

2. 공고사항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 당 사 자

업 종	신 고 번 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번호	소 개 지
식품자동판매기	만수1-2003-7	만남과호프	김순금	550919-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48-7
식품자동판매기	만수3-10	세화철물	김태경	290102-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865-17
식품자동판매기	만수5-24	매표소	곽덕순	410917-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08-24
식품자동판매기	만수1-2000-1	소망비디오	한관순	540808-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69-2
식품자동판매기	만수1-2003-2	동감비디오	최관호	650117-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27
식품자동판매기	만수5-36	만수숯불갈비	이순금	580082-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22-1
식품자동판매기	만수5-17	SK남인천주유소	민예경	610817-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10-3
식품자동판매기	만수1-2004-3	경동식당	한금철	720813-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69-7
식품자동판매기	만수1-2003-5	꾸이꾸이	전태성	640322-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73
식품자동판매기	만수1-34	크리아트	윤병열	600930-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79-2
식품자동판매기	만수2-31	만수노래방	최태성	581120-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868-50
식품자동판매기	만수3-8	뉴-멕시칸치킨	순난순	600427-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109-129
식품자동판매기	만수5-25	대풍상회	박태환	600417-1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46-5
식품자동판매기	만수3-2001-8	서가네냉막걸리	오미자	591025-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854-23
식품자동판매기	만수5-2004-11	모아모아빨래터	이은희	690201-2xxxxx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890-47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및 동법 제64조
-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1)
 - 청문일시 : 2007. 05. 28(월) 11: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6층)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3. 기 타 : 청문 불참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2007. 5.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7-480호

도로 지정 · 공고

건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 ·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로현황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46-95
- 나. 도로길이 : 86.67m
- 다. 도로너비 : 8.00 m
- 라. 도로면적 : 713.00 m²
- 마. 토지소유자 : 정한수, 정복균
- 바. 도로지정사유 : 건축신고(신축)

2. 건축신고현황

- 가. 위 치 : 고잔동 256-8번지
- 나. 건축주 : 정한수, 정복균
- 다. 용 도 : 공장
- 라. 규 모 : 1층, 연면적 344.54m²
- 마. 허가일 : 2007.5.4.

고	시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18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 1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5.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논현2지구 7블럭 새터마을 신일해피트리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세계건설(주) (대표자 : 권 용 환)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4-4번지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 7블럭
- 연 면 적 : 169,585.048㎡
- 사업규모 : 공동주택 지하2층~지상24층, 12개동, 828세대 부대·복리시설
- 사 업 비 : 299,622,880천원
- 변경 내역
 - 건축면적 : 8,160.516㎡ ⇒ 8,317.596㎡

- 연 면 적 : $169,353.494\text{m}^2 \Rightarrow 169,585.048\text{m}^2$
- 건 폐 율 : $14.09\% \Rightarrow 14.37\%$
- 상가동 점포구획 : B01 $\Rightarrow$ B01~B07, 201~206호 $\Rightarrow$ 201~208호
- 기타 경미한 변경 등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4. 11. 8 ~ 2007. 5.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사 업 구 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승 인 번 호	2004-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호					
상 호	세계건설(주)		등 록 번 호	인천광역시-토목건축공사업-04-0021		
대 표 자	권 용 환		사업자등록번호	120111-0102476		
영업소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4-4번지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 7블럭		대지면적(m ²)	57,891		
건축면적(m ²)	8,317.596		건 폐 율 (%)	14.37		
연 면 적(m ²)	169,585.048		용 적 륜 (%)	224.84		
동수(주/부)	13/6		세 대 수	828		
주 택 형 별	민간분양		총 사 업 비	299,622,880천원		
착 공 예 정 일	2004. 11. 8.		사용검사예정일	2007. 5. .		
등 고 유 번 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m ²)	등 고 유 번 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m ²)	
1	701	12,550.006	2	702	11,264.546	
3	703	9,481.716	4	704	11,026.834	
5	705	9,336.356	6	706	12,550.006	
7	707	12,120.958	8	708	13,234.765	
9	709	8,362.729	10	710	7,996.79	
11	711	10,120.784	12	712	11,046.517	
13	관리동	1,770.153	14	경비실-1	14.16	
15	경비실-2	14.16	16	기계/전기실	617.37	
17	지하주차장-1	21,175.838	18	지하주차장-2	13,895.205	
19	근린생활시설	3,006.155				
변경사항	- 건축면적 : 8,160.516m ² ⇒ 8,317.596m ² - 연 면 적 : 169,353.494m ² ⇒ 169,585.048m ² - 건 폐 율 : 14.09% ⇒ 14.37% - 상가동 점포구획 : B01 ⇒ B01~B07호, 201~206호 ⇒ 201~208호 - 기타 경미한 변경 등					
2007년 5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14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신자 : 인천광역시장

제 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서

1.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업주체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상호	대 표 자	소 재 지		구분	유 형	규모	동 수	세 대 수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사업비	사업 승인 일	착공 예정 일	준공 예정 일
	세계 건설 (주)	권 용 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2택지 개발사업지 구 7블럭	주택 건설 (분양)	아 과 트	101.872 ㎡ 116.804 ㎡ 134.894 ㎡ 156.168 ㎡ 186.544 ㎡	12	164 172 400 88 4	169,585 .048	57,891	299,622, 880천원	2004. 10.12	2004. 11.8

2.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건축면적 : 8,160.516㎡ ⇒ 8,317.596㎡	
- 연 면 적 : 169,353.494㎡ ⇒ 169,585.048㎡	
- 건 폐 율 : 14.09% ⇒ 14.37%	
- 상가동 점포구획 : B01 ⇒ B01~B07, 201~206호 ⇒ 201~208호	
- 기타 경미한 변경 등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7 - 464 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4,2-74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대로2류44호, 대로2류74호선, 사업명: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6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 4 .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 : 남동구 고잔동, 논현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도로(대로2-44호선, 대로2-74호선)

【명칭】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1	도로:대로2-44호선	고잔동 326-1일원	L=497m, B=30m	도로개설
2	도로:대로2-74호선	논현동 66-36일원	L=346m, B=30m	"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주)한화 대표 남영선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성명】 (주)화인파트너스 대표 이동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번지 서린빌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7. 5 ~ 2009. 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불임 참조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7 - 465 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 : 남동문화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73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453-28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7. 4.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산1-14외 3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사업
- 명 칭 :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공원 총면적(34,828㎡), 금회시행면적(2,491㎡)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7. 5.30 ~ 2008.11.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남동구 구월동 산1-14, 산5-2,
산6-1, 643-3 번지

※“별첨 ”토지편입조서“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도서열람 일시 (공람기간내 , 09:00~18:00)
- 도서열람 장소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별첨”

토지편입조서

번 호	소재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비 고
	동	지 번		공부	공원	잔여	금외 시행	성 명	주 소	설 정 권	권 리 자 및 기 타 사항	
1	구월	610-1	전	682	682			인천광역시				
2		610-3	전	1	1			인천광역시				
3		610-4	임	4,627	4,627			인천광역시				
4		610-5	임	209	209			남동구				
5		610-6	전	3	3			남동구				
6		610-8	전	216	216			남동구				
7		610-9	임	5	5			남동구				
8		620-13	전	1,448	1,448			남동구				
9		620-22	임	232	74	158		민병두	인천 남구 송의동 42-153	근저당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만수동지점)	390,000,000
										지상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만수동지점)	토지전부
10		620-23	임	122	122			이송	경기 고양 일산 마두동 944-1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파주남지점)	600,000,000
										지상권	주식회사 우리은행(파주남지점)	토지전부
11		643-3	과	741	741		691	남동구				
12		643-5	과	121	121			남동구				
13		산1-14	임	14,737	14,720	17	317	남동구				
14		산5-1	임	2,614	2,614			남동구				
15		산5-2	임	2,279	2,279		538	남동구				
16		산5-3	도	1,456	833	623		인천광역시				
17		산5-4	임	1,669	1,669			남동구				
18		산5-6	임	1,595	1,595			남동구				
19		산5-7	임	1,595	1,595			이원자	안양.동안.비산1155주공그린벨 111-2102			
20		산6-1	임	1,274	1,274		945	남동구				
계				35,626	34,828	798	2,491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7 - 46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 : 시립도서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 : 시립도서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73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453-28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7. 4.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610-1외 2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시립도서관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공원 총면적(34,828㎡), 금회시행면적(5,31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7.5.30 ~ 2008.11.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남동구 구월동 610-1,3,4번지

※“별첨 ”토지편입조서“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도서열람 일시 (공람기간내 , 09:00~18:00)

○ 도서열람 장소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별첨”

토지편입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비고
	동	지번		공부	공원	잔여	금외시행	성명	주소	설정권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구월	610-1	전	682	682		682	인천광역시				
2		610-3	전	1	1		1	인천광역시				
3		610-4	임	4,627	4,627		4,627	인천광역시				
4		610-5	임	209	209			남동구				
5		610-6	전	3	3			남동구				
6		610-8	전	216	216			남동구				
7		610-9	임	5	5			남동구				
8		620-13	전	1,448	1,448			남동구				
9		620-22	임	232	74	158		민병두	인천 남구 송의동 42-153	근저당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만수동지점)	390,000,000
	지상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만수동지점)	토지전부	
10		620-23	임	122	122			이송	경기 고양 일산 마두동 944-1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파주남지점)	600,000,000
	지상권									주식회사 우리은행(파주남지점)	토지전부	
11		643-3	파	741	741			남동구				
12		643-5	파	121	121			남동구				
13		산1-14	임	14,737	14,720	17		남동구				
14		산5-1	임	2,614	2,614			남동구				
15		산5-2	임	2,279	2,279			남동구				
16		산5-3	도	1,456	833	623		인천광역시				
17		산5-4	임	1,669	1,669			남동구				
18		산5-6	임	1,595	1,595			남동구				
19		산5-7	임	1,595	1,595			이원자	안양.동안.비산1155주공그린빌 111-2102			
20		산6-1	임	1,274	1,274			남동구				
계				35,626	34,828	798	5,310					